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응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며,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

가대상 정원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R&D 세액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천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설치한 공익중소법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2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6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의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명(세무주사 8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국세청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세무주사 1명)으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3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의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3명(행정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국세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행정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기술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인력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 재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

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4.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제9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국세청 조사심의팀 운영 및 관리

제21조의3제1항 단서 중 “서울청 및 중부청”을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 지방국세청”으로, “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32명(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10명)”을 “27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으로, “세무주사보 6명”을 “세무주사보 4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114명(6급 53명, 7급 4명)”을 “108명(6급 48명, 7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

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강원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세무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대화면·방림면
	영월세무서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은 제외한다), 평창군(대관령면·진부면·봉평면·대화면·방림면·용평면은 제외한다)
	삼척세무서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중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정선군 중 임계면
	속초세무서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별표 2의 인천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포천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라북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세무서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주세무서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북진주세무서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중 천천면·장계면·계북면·계남면
	익산세무서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세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무서		
	남원세무서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면·장계면·계북면·계남면은 제외한다)

별표 2의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군위군”을 “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한다.

별표 4의 중부지방 국세청의 강원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	-------------

별표 4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라북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중 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계남면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별표 4의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 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96”을 “876”으로 하고, 일반직계 “892”를 “872”로 하며, 행정사무관 “120”을 “116”으로 하고, 세무주사 “237”을 “231”로 하며, 전산주사 “45”를 “44”로 하고, 세무주사보 “158”을 “154”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64”를 “62”로 하고, 세무서기 “31”을 “29”로 하며,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세무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을 “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28”을 “903”으로 하고, 일반직계 “924”를 “899”로

하며, 행정사무관 “128”을 “122”로 하고, 전산사무관 “14”를 “16”으로 하며, 세무주사 “244”를 “237”로 하고, 전산주사 “45”를 “42”로 하며, 세무주사보 “165”를 “159”로 하고, 전산주사보 “66”을 “64”로 하며, 세무서기 “32”를 “30”으로 하고,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세무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7 중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다음에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사무관 “5”를 “9”로 하고, 세무주사 “22”를 “18”로 하며,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다음에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305”를 각각 “20,08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7”을 “19”로 하며, 서기관 “188”을 “18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075”를 “1,073”으로 하며, 세무주사 “4,255”를 “4,321”으로 하고,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를 “74”로 하며, 세무주사보 “4,505”를 “4,515”으로 하고, 세무서기 “5,361”을 “5,252”로 하며, 전산서기 “68”을 “67”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739”를 “3,594”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를 “38”로 하며, 전산서기보 “43”을 “38”로 하고, 전화상담운

영서기보 “22”를 “18”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22”를 “30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419”를 각각 “20,197”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7”을 “19”로 하며, 서기관 “188”을 “18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04”를 “1,105”로 하며, 세무주사 “4,314”를 “4,372”로 하고,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4”를 “73”으로 하며, 세무주사보 “4,509”를 “4,518”로 하고, 세무서기 “5,383”을 “5,274”로 하며, 전산서기 “68”을 “67”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서기보 “3,739”를 “3,594”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를 “38”로 하며, 전산서기보 “43”을 “38”로 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2”를 “18”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22”를 “305”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2. 2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13명 (4급 1명, 5급 5명, 7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근로장려세제 운영	1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2)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 (6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국세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세무서)	73명 (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장려세제 집행(지방국세청)	363명 (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세무서)	68명 (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변칙 상속·증여 차단(세무서)	51명 (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체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	59명 (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489명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의2제3항) 다음에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을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6년 2월 2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
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
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
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
무관 2명), 별표 7의2의 정원4명(행정사무관 4명) 및 별표 10의2의 정
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5년 1
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2명, 별표 7의2의 세무주
사 4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
으로 본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징세법무국) ① ~ ③ (생략)	제6조(징세법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삭 제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삭 제>
⑤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조사국) ① ~ ⑦ (생략)	제9조(조사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국세청 조사심의팀 운영 및 관리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2명 (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10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6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세무서기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27명 (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 -----세무주사보 4명-----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14명(6급 53명, 7급 4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 ----- ----- ----- ----- ----- ----- 108 명(6급 48명, 7급 3명-----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4년 12월 31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삭 제>
[시행일: 2021. 12. 31.] 제4조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 12월 31일</u> ----- -----.
② ~ 제5조 (생 략)	② ~ 제5조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4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1명 및 세무주사보 2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세무주사 3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보 1명 및 세무주사보·공업주 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 사 6명)은 각각 <u>2023년 12월 31</u> <u>일까지</u> 존속한다.	② ----- ----- ----- ----- ----- ----- <u>2025년 12월 31</u> <u>일</u> -----.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 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사무관 1명 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행정사 무관 1명은 <u>2023년 12월 31일까</u> <u>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삭 제>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 사무관 1명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하며, <u>2024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으로 본다.	----- ----- <u>2025년 12월 31일</u> - ----- <u>2026년 1월 1일</u> ----- ----- ----- -----.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u>2023년</u> <u>12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4</u> <u>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u>2025년 1</u> <u>2월 31일</u> ----- <u>2026년</u> <u>1월 1일</u> ----- ----- -----.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26명(행정사무관 26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3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 ----- ----- ---- 2025년 12월 31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96	876	-20
일반직계	892	872	-20
행정사무관	120	116	-4
세무주사	237	231	-6
전산주사	45	44	-1
세무주사보	158	154	-4
전산주사보	64	62	-2

세무서기	31	29	-2
세무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신 설>	1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	2	-1
사무운영서기보	4	3	-1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28	903	-25
일반직계	924	899	-25
행정사무관	128	122	-6
전산사무관	14	16	+2
세무주사	244	237	-7
전산주사	45	42	-3
세무주사보	165	159	-6

전산주사보	66	64	-2
세무서기	32	30	-2
세무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신 설>	1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	2	-1
사무운영서기보	4	3	-1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u> <u>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시설주사보 또는</u> <u>공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5</u>	<u>9</u>	+4
·	·	·	
세무주사	<u>22</u>	<u>18</u>	-4
·	·	·	
·	·	·	
<u>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u> <u>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시설주사보 또는</u> <u>공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305</u>	<u>20,089</u>	-216
일반직 계	<u>20,305</u>	<u>20,086</u>	-216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7</u>	<u>19</u>	+2
서기관	<u>188</u>	<u>186</u>	-2
·	·	·	
·	·	·	
행정사무관	<u>1,075</u>	<u>1,073</u>	-2
·	·	·	
·	·	·	
세무주사	<u>4,255</u>	<u>4,321</u>	+66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u>75</u>	<u>74</u>	-1
·	·	·	
·	·	·	
세무주사보	<u>4,505</u>	<u>4,515</u>	+10
·	·	·	
·	·	·	

세무서기	<u>5,361</u>	<u>5,252</u>	-109
·	·	·	
·	·	·	
전산서기	<u>68</u>	<u>67</u>	-1
·	·	·	
·	·	·	
세무서기보	<u>3,739</u>	<u>3,594</u>	-145
·	·	·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5</u>	<u>38</u>	-7
·	·	·	
·	·	·	
전산서기보	<u>43</u>	<u>38</u>	-5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22</u>	<u>18</u>	-4
열관리운영서기보	<u>13</u>	<u>12</u>	-1
사무운영서기보	<u>322</u>	<u>305</u>	-17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419</u>	<u>20,197</u>	-222
일반직 계	<u>20,419</u>	<u>20,197</u>	-222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7</u>	<u>19</u>	+2
서기관	<u>188</u>	<u>186</u>	-2
·	·	·	
·	·	·	
행정사무관	<u>1,104</u>	<u>1,105</u>	+1
·	·	·	
·	·	·	
세무주사	<u>4,314</u>	<u>4,372</u>	+58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u>74</u>	<u>73</u>	-1
·	·	·	
·	·	·	
세무주사보	<u>4,509</u>	<u>4,518</u>	+9
·	·	·	
·	·	·	

세무서기	<u>5,383</u>	<u>5,274</u>	-109
·	·	·	
·	·	·	
전산서기	<u>68</u>	<u>67</u>	-1
·	·	·	
·	·	·	
세무서기보	<u>3,739</u>	<u>3,594</u>	-145
·	·	·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5</u>	<u>38</u>	-7
·	·	·	
·	·	·	
전산서기보	<u>43</u>	<u>38</u>	-5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22</u>	<u>18</u>	-4
열관리운영서기보	<u>13</u>	<u>12</u>	-1
사무운영서기보	<u>322</u>	<u>305</u>	-17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의2제3항)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6년 2월 21일)</u>	<u><신 설></u>	<u>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6년 2월 21일)</u>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6년 2월 21일)
<u>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u>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u>	<u><삭 제></u>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	·	·	
·	·	·	